

★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

□ 제안사유

-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는 각종 체육계 폭력사건 관련 경기인 등록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인 결격 추가 보완 필요
- '21.11.1.부터 시행중인 「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」 제출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서약서 제출 및 확인에 대한 실효성 문제 지적
- 다른 중범죄와 결격기간의 균형을 맞추어 반복되는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한조치 강화 필요

□ 주요내용

- **(제14조제1항제4호 신설)**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학생선수에 대한 등록 제한 명시 필요
 - * 학교폭력 학생선수의 경우, 징계 정보를 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본 심의사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조항 등 주무부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법안 발의 예정
- **(제14조제2항 개정)** 선수대상 폭행 사건 관련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된 사람 외에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 결격사유 강화 필요

○ 신·구대조표

현행	개정(안)	비 고
제14조(등록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. 1.~3. “생략” <신설>	제14조(등록 결격사유 등) ① “현행과 같음” 1.~3. “현행과 같음” 4. <u>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 단,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</u> 가.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: 3개월 나.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)의 금지 : 3개월 다. 학교에서의 봉사 : 5개월 라. 학내외 전문가, 교육감이 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설

현행	개정(안)	비 고
	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: 8개월 마. 사회봉사 : 8개월 바. 출석정지 : 10개월 사. 학급교체 : 10개월 아. 전학 : 12개월 5. “현행 제4호와 같음” 6. “현행 제5호와 같음” 7. “현행 제6호와 같음” 8. “현행 제7호와 같음”	
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·심판·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. 1.~10. “생략” 11. 선수를 대상으로 「형법」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<u>아니한 사람</u>	② “현행과 같음” 1.~10. “생략” 11. 선수를 대상으로 「형법」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<u>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한조치 추가
<신설>	부 칙 (2025. 10. 01.)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날 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시행한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칙 신설

□ 별첨: 「경기인 등록 규정」 개정안 전문